

해설 : 임현

문 1. 선고유예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 ③ 선고유예나 가석방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 ④ 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르다.

☞ 정답 ④

☞ 해설 : ①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선고유예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나, 가석방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한다.

\* 형법 제59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72조 제1항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선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선고유예이다(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가석방은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③ 선고유예시와 가석방시 모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없다.

선고유예에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제도를 두지 않은 점에서 집행유예와 구별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형법 제73조의2 제2항 :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고유예기간 경과의 효과는 '면소' 간주이다. 즉 전과가 남지 않는다.

반면 가석방기간 경과의 효과는 '형집행종료' 간주이다. 즉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뿐 전과는 그대로 남는다.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제1항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문 2.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네 가지 유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애착(attachment) -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가

강하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 ② 전념(commitment) - 규범적인 생활에 집착하고 많은 관심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옳을 것이 많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 ③ 참여(involvement) - 사회생활에 대하여 참여가 높으면 그만큼 일탈행위의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 ④ 신념(belief) - 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 정답 ③

☞ 해설 : 허쉬는 "우리 사회는 비행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긴장은 없으며,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사회연대의 요소)만이 있다"고 보았다.

사회연대(유대)의 요소는 애착, 전념, 참여 및 신념이 있으며, 이들의 요소가 강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고, 약할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③ 사회생활에 대하여 참여가 높으면 일탈의 기회가 적고, 참여가 낮으면 그만큼 일탈행위의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문 3. 교도작업임금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반대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의 자긍심을 낮춰 교화개선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② 사회정의나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③ 임금 지급을 위한 추가적 예산 배정은 교정 경비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형벌 집행 과정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형벌의 억제효과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

☞ 정답 ①

☞ 해설 : 교도작업임금제는 노무에 대한 보수 지급으로 노동에 대한 흥미, 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높여주며, 경제적 생활에 익숙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화개선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찬성론의 논거).

다만 형집행방법으로서의 노동이므로 일반인의 노동과는 다르며 국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반대론의 논거).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용자의 서신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 ②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발송한도는 매주 7회이다.
- ③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④ 수용자의 서신·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답 ③

☞ 해설 : ①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합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단,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인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에는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

항).

② 수용자의 서신 발송한도는 없다. 즉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서신은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횡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4조).

③ 동법 제65조 제2항

④ 수용자의 서신·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69조).

문 5.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 ㄱ.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 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
- 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 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 정답 ②

☞ 해설 : 무기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므로, 폭동, 도주 등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형집행법상 무기의 사용은 수용자에 대한 것과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것이 있다.

수용자에 대한 무기의 사용은 중대한 위해(위급한 경우), 위험물소지(명령불응), 폭동확산, 도주(정지명령불응), 무기탈취, 생명·신체·설비의 위험(중대하고 뚜렷한 위험[암기 - 위·위·폭·도·무·생] 등이 있으며, 수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무기의 사용은 생명·신체 보호, 수용자 탈취 저지, 건물·시설·무기 등의 위험 방지로서 급박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다.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ㄴ),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ㄷ)의 경우만으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형집행법 제101조(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등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수용자가 교도관등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 ② 교도관등은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6.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에 비하여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③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과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

☞ 정답 ①

☞ 해설 : 무능력화(incapacitation)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거나 추방하여 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인 사회에 있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능력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을 말한다.

무능력화에는 유죄로 확정된 모든 강력 범죄자에 대하여 장기형을 선고하는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자를 선별하여 구금하는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가 있다.

선별적 무능력화의 문제점으로는 ① 범죄자 대체효과, 즉 중범죄자가 구금되더라도 그 자리는 다른 범죄자들이 대신하게 되어 사실상 범죄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② 장기구금으로 인한 시설 및 경비의 증가, ③ 범죄예측의 기술적인 한계, 즉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범죄가 발생하는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과 향후 범죄를 저지러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인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의 문제(잘못된 부정은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잘못된 긍정은 과도한 형벌로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 ④ 발각되거나 잡히지 않기 위하여 범죄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흉폭화되는 경향 등이 있다.

- ① 선별적 무능력화는 집합적 무능력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용자 수가 적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게 되어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된다.

**문 7.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 및 재판단계의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구치소에서의 정밀신체검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공간에서 동성의 교도관이 짧은 시간 내에 손가락이나 도구의 사용 없이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마약의 복용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소변을 강제채취하는 일은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검찰조사실에서 계구(보호장비)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수갑 및 포승을 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정답 ④

☞ 해설 : ④ 검사조사실에서 계구사용(2005. 5. 26. 2004 헌마 49) - 위헌

<검사조사실에서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 2호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취하고 있는 원칙과 예외의 이러한 완전한 전도는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① 헌재결 1999.05.27, 97헌마137 :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辯解)·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며,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그러나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오면 일반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재소자용 의류 때문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미결수용자는 수사단계부터 고지·변해·방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촉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교정 현실이 인적·물적 설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미결수용자의 도주 방지는 계구(戒具)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수단에 의할 것이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② 헌재결 2006. 6. 29. 2004헌마826 : 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 속옷을 내리고 상체를 숙인 다음 양 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한 행위는 마약류 음용 전과가 있어 마약류 등 반입금지품을 은닉하였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의 수단과 방법 또한 사전설명, 외부와 차단된 공간, 같은 성별의 교도관, 짧은 시간 등 청구인의 명예나 수치심 등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인격권과 신체에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헌재결 2006.7.27. 자 2005헌마277 :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교도소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로 한다.
-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로 한다.
- ④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정답 ②

☞ 해설 : ② 형집행법 제95조제95조(보호실 수용) 제2항 :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단서 :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형집행법 제96조(진정실 수용) 제2항 :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형집행법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 :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제2항 :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동법의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 특별 재심사로 구분된다.
- ④ 분류심사사항으로는 처우등급,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 거실 지정에 관한 사항, 이송에 관한 사항,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정답 ③

☞ 해설 : ③ 재심사는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로서,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가 있다.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정기재심사: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
- 2. 부정기재심사: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

① 형집행법 제59조(분류심사) 제3항 :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형집행법 제59조(분류심사) 제1항 :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 10.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②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③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예정지, 이전이유, 이전일자를 신고할 것
-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 정답 ③

☞ 해설 : ③ “일반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 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일반 준수사항 : 상·선·보·이]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 특별 준수사항 : 야·지·파·손·거·사·음·마·검·령]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소장이 1년 중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수형자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소한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 ②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 ③ 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 ④ 무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 정답 ①

☞ 해설 ① : 귀휴의 최소 복역 기준은 6개월이다. 즉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 형집행법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문 12. 개방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처우의 유형으로는 외부통근제도, 주말구금제도, 부부접견제도 그리고 민영교도소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 ②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는 유형적·물리적 도주방지장치가 전부 또는 일부가 없고 수용자의 자율 및 책임감에 기반을 둔 처우제도이다.
- ③ 외부통근제도는 수형자를 주간에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작업장에서 생산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사법형, 행정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 ④ 우리나라는 가족만남의 집 운영을 통해 부부접견제도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외부통근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나 주말구금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 정답 ①

☞ 해설 : ① 민영교도소는 그 운영의 주체가 국가 아닌 민간일 뿐, 개방처우를 위한 시설로 볼 수 없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 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개방처우급 - 구내작업 및 외부통근작업 가능
- ②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 ③ 완화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④ 중경비처우급 -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 정답 ②

☞ 해설 :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1. 개방처우급 :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4. 중(重)경비처우급 :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문 14.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설내 처우의 범죄학습효과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
- ② 형법, 치료감호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사회내 처우에는 전자감시,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외출제한명령 등이 포함된다.
- ④ 사회내 처우의 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비행청소년이나 경미 범죄자 또는 과실범이다.

☞ 정답 ②

☞ 해설 : ② 청소년보호법에는 보호관찰 규정이 없다.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형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에도 소년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사회내처우(Community Treatment)란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감시와 원호를 통하여 그 개선·개생을 도모하려는 처우제도를 말한다. 사회내처우는 비시설처우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교정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이는 시설내처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시설 내에서의 자유형의 집행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비인도적인 면, 사회와의 격리 및 낙인효과로 인해 범죄인을 개선교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범죄배양효과(crime-breeding effect)를 야기하는 점, 행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점 등의 부정적 측면이 감옥실패론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현대 형사정책은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그 중점을 이행하는 추세에 있다.

문 15. 조선시대 흘형(恤刑)과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흘형이란 범죄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집행을 엄중·공정하게 진행하되, 죄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 성심껏 보살피며 용서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② 흘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減刑)이 있었다.
- ③ 구금 중인 죄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구금 중에 친상을 당한 때에 죄인을 옥에서 석방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을 치르고 난 후 다시 구금하는 보방(保放)제도가 있었다.
- ④ 조선시대 유형은 중죄자를 지방으로 귀양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기금고형에 속한다.

☞ 정답 ②

☞ 해설 : 흘형(恤刑)은 죄수에 대하여 신중히 처리하며, 가엾게 여겨 보살피고 용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사면(赦免), 감강종경(減降從輕), 보방(保放) 등을 들 수 있다.

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강종경(減降從輕)은 형벌의 종류를 한 단계씩 낮추어 처리하는 오늘날의 감형제도이다.

보방(保放)제도는 구금중인 죄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구금 중 상(喪)을 당한 때 죄인을 옥에서 석방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을 치르고 난 후 다시 구금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또는 귀휴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②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형벌에는 태, 장, 도, 유, 사(笞, 杖, 徒, 流, 死)의 다섯 가지가 있다.

태는 작은 곤장으로 때리는 형벌, 장은 곤장으로 대수를 더하여 때리는 형벌, 도는 지금의 징역형의 일종, 유는 유배에 해당하는 형벌, 사는 지금의 사형에 해당한다.

감강종경(減降從輕)을 적용할 때에는 형벌의 종류를 한 단계씩 낮추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유형으로,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처리한다.

**문 16.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 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배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③ 교정시설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는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 처치가 포함된다.
- ④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까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 ① 형집행법 시행령 제51조(건강검진횟수) 제1항 :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법 시행령 제53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2항 :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형집행법 시행령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4. 환자의 영양지도 및 관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④ 형집행법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외부의료시설진료)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문 17. 수용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이의 근거가 된다.

- ②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③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수용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④

☞ 해설 : ④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순회점검공무원에게도 청원을 할 수는 있으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원을 할 때에는 언제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 순회점검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는 방법도 있을 뿐이다.

\* 형집행법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법 제118조(불이익처우 금지)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문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경우에 언제나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하되, 최소한의 수준의 차단시설이어야 한다.
- ②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답 ①

☞ 해설 :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 형집행법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② 형집행법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제1항 :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작업 등(이하 이 조에서 "상담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형집행법 제53조(유아의 양육) 제1항 :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문 19.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 ②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 ④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정답 ④

☞ 해설 : 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판 2012. 2. 23,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행 법체제 및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특례 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 대판 2012. 2. 23,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 현역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어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명할 수 없는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③ 대판 2008.7.24, 2008어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④ 대판 2009.3.30, 2008모1116

**문 20.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법원으로부터 벌금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 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ㄷ.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ㄹ.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한다.
- ㅁ.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4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ㅁ

☞ 정답 ③

☞ 해설 : ㄴ, ㄷ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ㄹ. ㄴ - 동법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①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집행시간) 제2항 :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9시간을 넘겨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1일 총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ㄱ - 동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